

알기 쉬운 공정거래법 (2)

- 기업결합의 제한 -

김성근 / 세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론

기업결합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의 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각자 독립된 기업들을 통일된 의사결정 및 관리체제 안에서 활동하도록 조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이유는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의 규모 및 활동형태가 변화함으로써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결합을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기업결합은 경제적 효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결과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경제적 효율의 향상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은 시장구조 자체를 비경쟁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경쟁촉진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

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경쟁촉진과 효율향상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조화를 피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1996년 12월 개정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업결합규제의 요건

1. 제7조 제1항 소정의 기업결합의 요건

가. 기업결합의 주체

개정전에는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나. 기업결합의 유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유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여기서 '다른 회사' 라 함은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주식(지분)을 '취득' 함으로써 즉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더 나아가 취득 당시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경쟁제한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지분)의 '소유' 도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된다.

(2) 임원의 겸임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임원의 지위를 겸임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의미한다.

(3) 회사의 합병

여기서의 '합병' 이 상법 제174조의 합병을 의

미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서 합병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상법상의 합병에 대해서만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의 합병에 대해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공정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실상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4) 영업의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법상의 영업의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영업의 일부의 양수나 자산의 양수의 경우에도 양수의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5) 신회사설립에의 참여

이외에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 기존 당사회사와의 상호경쟁 또는 원재료의 의존관계 여부,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 당사회사와의 사실상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다. 기업결합규제의 기준 -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여기서 '일정한 거래분야' 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또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이라 함은 기업결합 후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실효성있는 경쟁을 기대

할 수 없고,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가 형성 또는 강화되어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정 공정거래법은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3.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사례 1

- 송원산업주식회사의 대한정밀화학(주) 주식취득
(의결 제82-24호)

☞ PVC 안정제 등을 생산·판매하는 피심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정밀의 주식을 100% 취득한 사안에서 PVC 안정제 생산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위(54%)인 피심인이 시장점유율 2위(19.3%)인 대한정밀의 주식을 전부 취득함으로써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평균 73%로 확대될 것이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 독점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이유로 피심인으로 하여금 대한정밀의 주식을 10% 미만이 되도록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 건에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사유로서 피심인이 부산직할시로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부산직활시 소재 공장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어 대한정밀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인수한 후 대한정밀공장으로 피심인의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수요개발에 의한 매출액증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절감, 가동률 및 기술향상에 의한 원가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사례 2

- 동양나이론(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의결 제96-51호)

☞ 피심인은 1996년 1월 3일 한국카프로락탐(주)의 지분이 20.38%가 되었다고 신고하였으

나, 실제로는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등을 통하여 30.14%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사안.

카프로락탐은 나이론의 원료로서 그 수요처는 피심인을 비롯한 4개사인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카프로락탐은 한국카프로락탐이 34%를 공급하고 그 나머지 6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입카프로락탐 가격은 1984년 이래 국산보다 고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프로락탐 산업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어 신규진입이 어렵다는 등 시장구조상의 문제점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전 주식취득의 결과 원료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며 나아가 제품시장에서의 경쟁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인정함.

사례 3

- 한화기계(주)의 삼미정공(주) 주식취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사례

☞ 한화기계는 1994년 11월 22일 삼미정공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5일 주권을 교부받아 같은 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였음. 그런데 이전에서 한화기계는 국내 베어링업계 시장점유율이 1위이고 삼미정공은 2위로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한화기계의 시장점유율이 41.1%로 증가되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베어링은 수입자유화로 국내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고, 특히 97년 이후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될 경우 수입품과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② 베어링은 모든 기계의 핵심 부품으로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서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나 양사가 경영상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산업구조 및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설정이고, ③ 수출시장의 여건호조로 신규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이에는 장기간 및 많은 자금이 소요되며, ④ 양사의 결합으로 생산관리 및 기술의 장단점이 보완되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⑤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여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였음.

4. 제7조 제3항 소정의 기업결합의 요건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기업결합의 유형이나 기준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는 다른 회사의 주주를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강제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하여 주식을 양도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교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회사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교사하여 합병하는 경우, 부당하게 높은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하거나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부진한 상태에 빠지게 하고 주가의 하락에 편승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우월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사업부진에 편승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을 겸임하거나 회사를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구속적인 조건이 붙은 거래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으로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에 타격을 주고 그 혼란에 편승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의 겸임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기업결합의 신고

개정 전에는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산 2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인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종래 사전신고제도와 사후신고제도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를 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기업 결합신고제도는 기업결합의 규제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개정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3. 제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사례 4

- 고려카프로락담(주)와 10개업체의 주식소유신고 의무위반(고발 제1호 1981. 9. 30.)

☞ 피심인들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신고를 최저 8일에서 최고 34일까지 지체하였으며, 피심인 중 대봉산업(주)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 시정명령(제16조)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업결합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범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범위반상태를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과징금(제17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형사적 제재(제66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는 연령 층에 따라 다양하다.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도 있다.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를 나이 든 사람이 부르면 주책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젊은 오빠로 보인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쉽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지만

쉽게 사는 비결중의 하나인 젊은 사람들의 노래를 배워 부르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나는 동안(童顔)으로 나이보다 훨씬 쉽게 보여 집사람이 걱정(?)하는데(집사람은 젊은 자기와 같이 살아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작 노래방에 가면 '가요무대'에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훌러간 노래를 불러 출지에 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피해보려고 지난 80년대에 유행하였던 '아파트',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랑으로'를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노래는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18번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앞에서 부르기라도 하는 날 이면 황당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원래 나는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항상 끼고 살 정도로 듣기를 좋아했다. 존 바에즈, 바바라 스트라이젠프, 머라이어 캐리 등 많은 팝송 가수를 좋아했고 프랑스 유학 시절에는 상송에 빠졌다.

'젊은 오빠'로 유쾌하게 삽시다

특히 좋아했던 가수는 비틀즈(Beatles)였는데 이들이 해체되면서 남긴 앨범들을 구하려고 청계천을 헤매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이 앨범들은 우리집 가보로 남아있다.

비틀즈의 노래는 멜로디도 좋지만 그 내용도 음미할 만하다. 즐겨듣는 'Let it be'라는 노래 가사속에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뜻

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의미이다. 즉 모든 일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세상만사가 순리대로 되지 억지로는 안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은 노래 듣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을 그냥두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회식문화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18번이 몇곡 있어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나중이 되어 자신의 18번을 빼앗길 경우 19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래도 몇곡 있어야 한다. 사실 노래 부르는 것에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로서는 이런 경우 종종 당황할 경우가 많았었다.

나의 18번은 '바위섬'인데, 이 노래는 결혼 전에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많은 연습을 한 노래이다. 많은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신랑 신부가 화

음을 맞추어 같이 노래를 부를 경우 보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다. 다행이 신부수업중이던 아내가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높은 음도 없고 쉽게 부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화음도 가능한 이 노래를 같이 선정하여 많이 연습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물론 앙코르를 대비하여 먼저 '사랑해'를 부르고 앙코르 요청에 따라 이 노래를 불렀다. 설사 앙코르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앙코르를 하고 이 노래를 불렀다.

'바위섬' 만 고집
하다보니 결혼할
당시에는 신곡
이었는데 지
금은 진부
한 노래가
되었고,
곡 자체가
약간 쳐져
서 노래방
점수가 80점
을 넘지 못했
다.

노래방 기계는 경험
상 약간 빠른 듯하고 박자
가 잘 맞아야 점수가 잘 나온다. 그

런데 요즘의 신곡이라는 것이 우선은 가사가 어렵고 빠르기 때문에 잘못 노래하면 비맞은 중이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집 애들이 좋아하는 H.O.T의 '캔디', 쿨의 '운명', 영턱스의 '정', 룰라의 '날개잃은 천사', 주주클럽의 '16/20' 등을 배워 보려고 애들과 같이 연습을 했는데, 우선 부르기도 매우 힘들고 무슨 내용으로 중얼거리는지도 몰라 포기했었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들의 노래가 춤을 같이 병행하여야 제맛이 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날개잃은 천사'에서는 한손으로 가볍게 엉덩이를 쳐가면서 불러야 제맛이 나오고, '운명'의 경우는 마이크 없이 온몸을 흔들어 가면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가 약간 나온 내가 이렇게 부른다고 할 때 그 모양은 얼마나 우스울까 하는 두려움에 시도를 못했었다.

그런데 집에서 가끔 애들과 같이 춤과 병행하여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재미도 있고 흥도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가사의 내용이 10대 가수들의 웃차림에서 느끼는 거부감이 아니라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며 멜로디가 저절로 흥이 나게 하는 것

이다. 더욱이 5곡 정도 연속으로 율동을 섞어서 부르면 땀이 흐를 정도여서 운동효과도 있고, 가족이 함께 부르니 더욱 좋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요즘은 젊은이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게 살 수 있는 젊은이의 노래를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젊은 사람의 노래를 배워 '영원한 젊은 오빠'로 건강하고 유쾌하게 삽시다. ■



덤과 에누리

이용선 / 전주일보 주필

드는 상품에는 가격이 붙는다. 그 물건과 화폐의 교환비율을 돈 액수로 나타낸 것인 가격인데 이런 가격을 놓고 사람들은 싸다거나 비싸다거나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싸다거나 비싸다는 말은 시가(時價)에서 생기는데 시가는 그때그때 상품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니까 속말로 이장떡이 클지, 훗장떡이 클지는 아무도 모른다. 봄날의 쑥떡값도 비쌌다 쌌다 하면서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번 장에 나온 떡이 싼지 다음 장에 나올 떡이 더 쌀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가격에는 출고가격이 있고 도매가격, 소매시세에 소비자권장가격이라는 것도 있다. 또 백화점에서 구두나 넥타이를 세일할 때는 40%~50%로 값을 깎아서 판다. 어떻게 정가(定價)보다도 싸게 시가(時價)의 50%만 받고 상품을 파는 것인지 그런때 할인가격은 얼마까지가 상품주인에게 손해없는 가격인지, 소비자들은 짐작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지정하는 공정가격도 있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암거래 가격도 있다.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 하니까 사는 사람은 싸다 비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세가 오르고 내려 비싸고 싸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물건을 파는 장소나 상인에 따라 또 그 상품을 사가는 소비자에 따라 싸거나 비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싸다는 것이 뭐인고?”

“물건값이 일정한 기준보다 훨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둑놈 물건이 아닌 바에야 싼거리가 어디 있는가. 장사꾼들은 물건을 팔 때 자기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싸구려! 싸구려!」하고 외친다. 자기 물건이 남이 파는 물건보다 싸니까 손님더러 와서 사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싸구려」는 꼭 「싸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라」는 소리가 되어 버렸고 이런 「싸구려」도 이제는 「꼴라! 골라!」로 바뀌고 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 노점상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옷이나 신발을 수복하게 쌓아놓고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골라가라는 뜻이다. 값을 부르고 묻고 할 것도 없이 내붙인 균일가로 넥타이 1개에 1천원씩 파니까 누구든지 마음 끌리는 대로 좋은 넥타이를 골라 잡으란 뜻이다. 상품을 싸구려로 대량처분하기 위해서는 딱 맞는 구호가 바로 「꼴라! 골라!」로 장사를 하니 시의(時宜)에 맞는 센스다. 그러나 「싸구려 물건」은 싸게 파는 물건인 대신에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라는 뜻도 되었다. 그러니까 싼 것이 비지떡이다. 그렇지만 실속은 쟁기면서도 사가는 사람에게 기분좋게 파는 방법이 있다. 장사

꾼들의 말속(言辯)이다.

소비자들의 긴장을 우스개소리로 풀면서 '싸게 산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이다.

"강경(江景) 새우젓 장수가 새우젓 파는 솜씨를 보았소?"

"얼마전 인심좋은 충청도를 벗대면서 강경 새우젓 도가에서 새우젓 파는 상술을 TV에서 보았소."

이런 재래시장에서는 빽빽하게 달아서 파는 저울을 쓰지 않는다. 저울 대신에 뒷박이나 바가지를 쓴다.

드럼통에 담긴 새우젓을 쇠갈퀴로 건져 뒷박 위에 수북하게 쌓아 올린다. 젓국물이 철철 넘쳐 떨어지는데도 두 번 세 번 쇠갈퀴질을 하면서 더 얹어주고

"아주머니네 식구가 몇이오?"

하고 새우젓 사는 할머니더러 '식구' 수를 물고나서,

"영감님 뜻으로 조금 더 드리죠."

"고맙소. 많이 준 걸요."

"에이, 인심은 써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이번에는 외손자 뜻으로 죄금 더 가져 가시오."

이렇게 인심을 쓰면서 덤을 주는 것이다.

"덤이라고 했소?"

"그렇소."

덤은 제 값어치의 물건 밖에 약간 더 얹어주는 물건이다. 이 덤이 바로 소비자들을 기분좋게 해주면서 싸게 샀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상계(商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사고 팔 때 덤을 주고 받았다. 이 덤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수다. 정한 수효 밖에 더 받는 물건이다.

"그 우수가 우수리요?"

"그렇기도 하지요. 원래 우수리는 물건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수량에 차고 남는 끝수(端數)죠. 그러니까 이런 우수리는 상품값에서 떼어 버리고 인심을 쓰는 수가 있소."

이렇게 덤 상품을 가지고 정한 수량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 인심을 쓰는데 또 한 가지는 값을 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거래하는 방법이 바로 에누리다.

우리네가 보통 '에누리 한다'고 하면, 장사꾼이 부르는 물건 값에서 소비자쪽이 「값을 깎자」고 홍정을 해서 싸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뜻도 에누리다. 상품을 파는 장사꾼 쪽에서 쓰는 에누리다.

"사는 사람이 에누리하지 장사꾼이 어떻게 에누리를 하오?"

"장사꾼도 처음부터 받을 값보다 더 값을 올려 불러 에누리를 하죠."

"처음부터 올려 불러요?"

"월가(越價)죠. 1백원 받을 물건이면 1백50원을 불러 놓고 깎아 주어 가면서 1백원까지 손님과 홍정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에누리는 처음부터 물건값을 과장하여 올려놓고 깎아주는 장사꾼에게 실속이 있고, 소비자는 '1백50원 내라는 것을 1백원에 삼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니 완전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결국은 누가 속이고, 누가 속았는가. 둘중 한쪽은 분명히 속았지만 양쪽다 '내가 이겼다'는 성취욕의 차각에 빠져 후한 인심을 쓰고 사는 것 아닌가. ■

좋은 스트레스의 주인공이 되라

정순철

체육학 박사 / 헬스아카데미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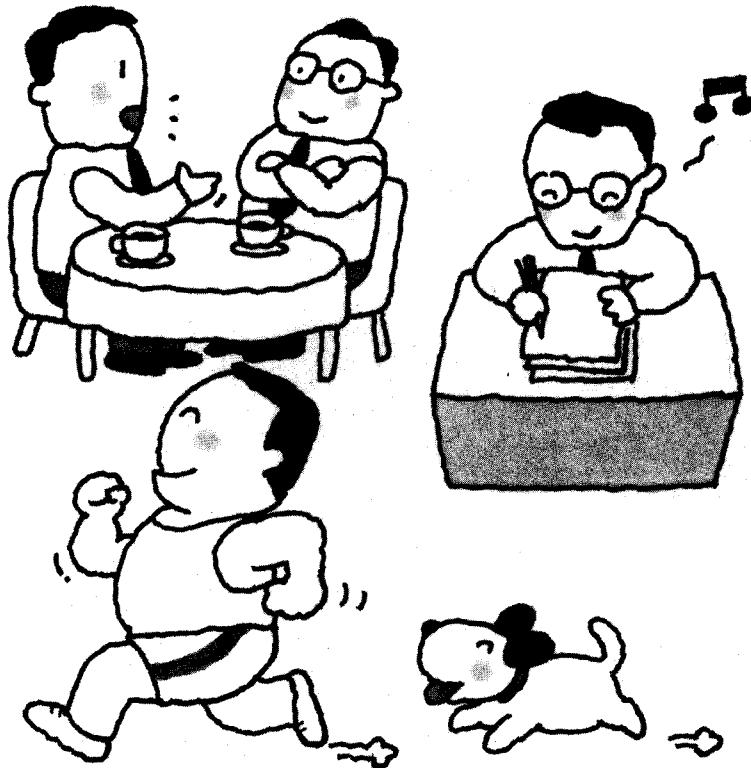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퇴행성질환인 심장병, 암, 관절염, 간경변, 우울증 등은 대개의 경우 나쁜 생활습관, 즉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방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든 질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문제는 생활속에서 부닥칠 수 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여 삶의 활력소를 찾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경쟁자와 적대감이 생기고, 진급이나 업무의 추진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며,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몸이 불편하거나 격무에 시달려서 피곤이 쌓이고, 불규칙한 식사로 인하여 소화불량이 생기고, 흡연과 음주에서 오는 생체리듬의 부조화나 약물 남용 등으로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가중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어려운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했다면 당신은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입학금을 준비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양면성이 있기 마련인데 당신이 똑같은 상황을 당해서도 나쁜 스트레스(Distress)가 아닌 좋은 스트레스(Eustress)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습이 필요하다. 바로 시행해 보라!

첫째, 평소에 당신의 고충과 애로를 토로할 친구를 사귀는 연습을 하



라! 당신이 어려울 때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여 가족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하라! 그러면 당신은 좋은 스트레스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셋째, 가정이나 직장에서 즐겁게 일하는 연습을 하라! 당신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만족도와 자아실현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시간을 아껴쓰는 연습을 하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때 당신은 매사에 자신을 갖게 될 것이다. 목표가 높으면 실패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끝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시켜주는 운동을 연습하라! 운동은 생체내의 본능적인 경계반응을 완화시켜 주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며, 정신적인 이완과 원기를 찾아 주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막아 준다. 연습은 습관을 바꾸고, 건전한 습관은 당신의 인생도 건강하게 바꿀 것이다. ■